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 30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9. 2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1.12.16. 타법개정) 및 우리 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안 제3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다. 적극행정위원회(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마.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 바. 위원의 임기(안 제8조)
- 사. 위원의 해촉(안 제9조)
- 아. 회의 등(안 제10조)
- 자.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등(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20일),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30018호)」(2019. 8. 6. 제정·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2020년 10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 2021년 6월 8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적극행정의 장려) 조항의 신설과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2021년 7월 27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2(적극행정국민신청)과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 ○ 개정 전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18호, 2020. 10. 5., 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감사담당관), 02-2241-21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

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수립내용은 추진과제 발굴·시행, 우수공무원 선발·우대·교육·확산,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추진사항 점검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위원의 해촉, 회의, 의견청취, 수당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을 규정하였음.

○ 적극행정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 개개인은 적극행정 및 성실행정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 기관장의 관심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합당한 보상체계 미흡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을 보호 및 우대하고 적극행정의 저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서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적극행정의 장려) 조항의 신설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2(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